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49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의 목적물에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면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u> <u>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법률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제3자 또는 목적물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공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별법이 아닌 「민법」 제750조¹⁾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 전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또한, 공사업자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현행 법률에서 전기공사 업체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많은 업체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²⁾,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공사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입법례³⁾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은 전체 업체 중 기술인력수가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따르면, 공제 가입률은 ('19) 14.1% → ('20) 14.2% → ('21) 14.3% → ('22) 15.6% → ('23) 15.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20% 미만임.

3) 후에 서술하는 사례 이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

20인 미만인 영세업체가 약 80%를 차지하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⁴⁾하고 있음.

또한, 소방산업은 대부분 업체 규모가 영세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필요성이 큼에도 공제가입율이 2018년 8월 기준 약 8%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⁵⁾되었음.

협 의무가입을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면,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⁶⁾에 대한 의무가입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⁷⁾도 있음.

전기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영세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사 건수 대비 96% 수준⁸⁾으로 영세한 공사업체가 많아, 상당수의 공사업체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없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맥락에서, 영세한 전기공사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엔지니어링산업 등 영세업체가

6)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각각 법률에 건설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음.

7)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대한전기학회, 「전기공사 손해배상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의 필요성 고찰」

많은 타 업계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전기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⁹⁾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 발주사업에 한해 공사업체의 가입비용을 발주자가 부담¹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¹¹⁾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영세업체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부담하여 공공 발주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체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9)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전기공사업체(404개사, 응답기업 9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5.7%(89개사)가 의무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음.

10) 앞서 언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모두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사업대가 또는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2022년 기준,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7명, 부상 379명으로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약 21.9%(8,805건)를 점유하였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387명이었음.

특히, 가입비용을 국가 등이 도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공공 발주사업과 달리 민간 발주사업은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면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가입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의무가입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영세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 업체가 보험 가입비용을 부담¹²⁾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경영 악화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등이 가입비용을 부담하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 등에 규정¹³⁾되어 있어 개별 공사업 법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

12)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기준, 민간부문 전기공사가 약 24.1조원으로 보험요율을 공사금액의 0.5%로 가정시 약 1,205억원의 전기공사업체 이익 감소 예상된다고 설명함.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모든 공공발주 전기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가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령은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입법례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